					허가	불허가	
재판기	기록 열람·	복사/출력·복	제 신청서				
		(命)	전화 번	<u> </u>	010-49	79-1685	
신 청 인	성 명	지앤케이파트너스 대리인	담당 사무원		이인희, 복성기		
		변호사 김백진					
	자 격	채권자 대리인	소명자료		소송위임장, 직원증		
신 청 구 분		열람 ■ 복사	남 ■ 복사 □ 출력 □ 복제				
사 용 용 도	형사사건 고소장 작성용						
대 상 기 록	사건 번호	사	건 명		재 곡	판 부	
	2024하면13732 면책			수원회생법원			
복사/출력・			(복사/	출력 매수	미	1)	
복제할 부분	(복제 용량 메가바이트)						
복사/출력 방법	■ 법원 복사기	□ 변호사 단체 복	사기 🗆 신청	인 복사	설비	□ 필사	
이와 같이 신청하고, 신청인은 열람복사/출력·복제에 관련된 준수 사항을 엄수하며, 열람·복사/출력·복제의 결과물을 통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, 영업비밀 등을 개인정보 보호법							
등 관계법령상 정당한 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민사상,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.							
20 신청인 변호사 김백진 (서명 또는 날인							
비 고 (재판장 지정							
사항 등)							
영 수 일 시	20 .	: 	영 수 인				
신청 수수료	□ 500 -	원 🗌 면 제	(수입인지 붙이는 곳)				
복사/출력・복 제 비용		원					

※ 준수 사항 및 작성 방법

- 1. [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]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 1.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.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300 있는 경우
- 2. [민사소송법 제162조④항] 소송기록을 열람·복사한 사람은 열람·복사에 의하여 알게 된 사 항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3. 신청인·영수인란은 서명 또는 날인하고, 소송대리인·변호인의 사무원이 열람·복사하는 경우에는 담당 사무원란에 그 사무원의 성명을 기재한다.
- 4. 신청수수료는 1건당 500원(수입인지로 납부). 다만, 사건의 당사자 및 그 법정대리인 · 소송대리인 ·
- #. 교육 기교 대한 300년(구립전)도 납구가 다면, 자신의 장사자 및 그 답장네더한 오중네더한 변호인(사무원 포함) · 보조인 등이 그 사건의 계속 중에 열람할 때에는 신청수수료 면제한다.

 5. 법원복사기/프린터로 복사/출력하는 경우에는 1장당 5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(다만,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함).

 6. 매체를 지참하여 복제하는 경우에는 700메가바이트 기준 1건마다 500원, 700메가바이트 초과 시 350메가바이트마다 300원의 비용을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(매체를 지참하지 아니한 건 에 메레 비용 이 병교) 경우 매체 비용은 별도).

: 2024. 12. 26. 15: 59 : : 2025. 05. 15 11: 46

7. 복사/출력·복제할 부분 란에 복사대상(기록의 일부를 복사/출력·복제하는 경우에는 대상을 열거하여 특정하여야 함) 및 복사/출력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. 8. 열람·복사 담당 법원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